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2016가합511295 판결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可 고 1. 주식회사 A

2. B

3. C

변론 종결 2016. 6. 30.(피고 1, 2에 대하여) 2016. 9. 29.(피고 3에 대하여)

판결 선고 2016. 10. 27.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1,361,048원 및 그 중 301,360,882원에대하여 2016. 2. 19.부터 2016. 5. 7.까지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안성시 D 임야 7,636㎡ 중 18분의 1 지분에 관하여,가. 피고 C과 피고 B 사이에 2015. 9. 2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나. 피고 C은 피고 B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15. 9. 24. 접수 제4011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신용보증 및 그에 따른 대출 실행

1) 원고는 2013. 4. 4.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보증원금 2억9,700만 원, 보증기한 2018. 4. 3.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같은 날 원고에게 위 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회사는 2013. 4. 5.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우리은행으로부터 변제기를 2018. 4. 3.로 정하여 3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원고의 신용보증채무 이행 등

1) 피고 회사는 2015. 11. 23. 이자연체 등의 사유로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다.

2) 이에 원고는 2016. 2. 19. 우리은행에 301,967,562원(= 원금 2억 9,700만 원 + 이자4,967,56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원고는 위 대위변제금 중 2016. 2. 19. 606,680원을 회수하였고, 위 회수금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로부터 회수일까지 발생한 확정손해금은 166원이다.

다. 피고 C의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B은 2015. 9. 21. 형인 피고 C에게 안성시 D 임야 7,636㎡ 중 18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을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5. 9. 24.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15. 9. 24. 접수 제40117호,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피고 회사, B: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피고 C: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인 피고 B은 연대하여 채권자인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합계 301,361,048원(= 대위변제금301,967,562원 - 회수금 606,680원 + 확정손해금 166원) 및 그 중 잔여 대위변제금301,360,882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6. 2. 19.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이 위 피고들에게 최종적으로 송달된 날인 2016. 5. 7.까지 약정지연배상금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83100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가까운 장래인 2016. 2. 19.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이 된다.

①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5. 9. 21. 이후인 2016. 2. 19. 우리는 행에 대위변제를
함으로써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지만, 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에 이미 발생하였다.

②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불과 약 2개월 후인 2015.
11. 23.경 발생하였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 게 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우리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당시 피고 B은 적극재산으로
공시지가 8,611,711원 상당인 이 사건 토지 지분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보증금채무
2억 9,700만 원, 우리은행에 대한 채무 5억5,300만 원 상당,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채무 1억
원이 존재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B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러한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 지분을 피고 C에게 매도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므로, 피고 C과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피고 B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피고 C의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B의 채무초과상태를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 지분에 대한 정당한 시가 1,000만 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매수하였고, 이 사건 토지가 선산으로 이용되고 있어 불가피하게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매수하였으므로, 피고 C은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C과 피고 B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C은 피고 B의 경제적 사정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이고, 을다 제1, 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 C의 선의를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원고의 사해행위취소권의 행사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C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인숙, 판사 노미정, 판사 이지수